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박지혜 · 김성환 · 장종태
박지원 · 이병진 · 황명선
이재강 · 김 윤 · 이광희
조인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, 자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12·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.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).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항개발사업이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및
공항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

제4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의2.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에 관한 평가 및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제3조(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공항개발사업이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및 공항주변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조(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(생략)	제4조(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<u>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에 관한 평가 및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</u> 8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